

#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. 8.  
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의 지정을 폭넓게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다양한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목적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추가함(안 제1조).
- 나. 상위법령에서 위수탁자가 명시됨에 따라 별표중 사무수탁자를 삭제함(안 별표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나. 합의 : 해당없음
- 다. 기타 :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 
(2) 입법예고 : 2003. 7. 11. ~ 7. 30. (20일간) / 의견없음

##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산업단지” 를 “일반지방산업단지”로, “지방자치법 제95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표중 사무수탁자란을 삭제하고, 동표 근거법령란중 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항, 동법 제30조, 동법시행령 제5조”를 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항 ·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<u>지방산업단지</u>의 관리업무를 <u>지방자치법 제95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[별표]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위탁사무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탁사무명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무수탁자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근거법령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산업단지관리업무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대전제1·2산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공업 배치 및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가.~아.(생략)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업 단지: 대전산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공장 설립에</u></td></tr> <tr> <td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업단지협회장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관 한 법 률</u></td></tr> <tr> <td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대전제3·4산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제2조제7항,</u></td></tr> <tr> <td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업 단지: 대전제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동법 제30조,</u></td></tr> <tr> <td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3·4산업단지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동 법 시 행 령</u></td></tr> <tr> <td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관리공단 이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제5조</u></td></tr> <tr> <td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사장</u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위탁사무명	사무수탁자	근거법령	산업단지관리업무	<u>대전제1·2산</u>	<u>공업 배치 및</u>	가.~아.(생략)	<u>업 단지: 대전산</u>	<u>공장 설립에</u>		<u>업단지협회장</u>	<u>관 한 법 률</u>		<u>대전제3·4산</u>	<u>제2조제7항,</u>		<u>업 단지: 대전제</u>	<u>동법 제30조,</u>		<u>3·4산업단지</u>	<u>동 법 시 행 령</u>		<u>관리공단 이</u>	<u>제5조</u>		<u>사장</u>	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일반지방산업단지</u>----- <u>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</u> <u>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</u> ----- -----.</p> <p>[별표]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위탁사무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탁사무명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근거법령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산업단지관리업무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가.~아.(생략)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</u></td></tr> <tr> <td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제8항·제31조제1항 및</u></td></tr> <tr> <td>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동법시행령 제5조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위탁사무명	근거법령	산업단지관리업무	<u>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</u>	가.~아.(생략)	<u>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</u>		<u>제8항·제31조제1항 및</u>		<u>동법시행령 제5조</u>
위탁사무명	사무수탁자	근거법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업단지관리업무	<u>대전제1·2산</u>	<u>공업 배치 및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~아.(생략)	<u>업 단지: 대전산</u>	<u>공장 설립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업단지협회장</u>	<u>관 한 법 률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대전제3·4산</u>	<u>제2조제7항,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업 단지: 대전제</u>	<u>동법 제30조,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3·4산업단지</u>	<u>동 법 시 행 령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관리공단 이</u>	<u>제5조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사장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탁사무명	근거법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업단지관리업무	<u>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~아.(생략)	<u>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제8항·제31조제1항 및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동법시행령 제5조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지방자치법

[일부개정 2002.3.25 법률 제6669호]

第95條 (事務의 委任등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,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.<改正 1994·12·20>

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(事業所·出張所를 포함한다)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.<改正 1994·12·20>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·檢査·檢定·管理業務中 住民의 權利·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·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.<改正 1994·12·20>

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改正 1994·12·20>

##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
[일부개정 2002.12.30 법률 제06842호]

第31條 (産業團地管理公團등) ①管理權者는 産業團地의 效率적인 管理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機關에 管理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. <改正 1994.1.7, 1995.12.29, 1996.12.31>

②産業團地管理公團(이하 "管理公團"이라 한다) 또는 産業團地管理業務를 委託받기 위하여 入住企業體로 구성된 協議會(이하 "入住企業體協議會"라 한다)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要件을 갖추어 管理權者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. <改正 1996.12.31, 1999.2.8>

③管理公團 및 入住企業體協議會(이하 "管理公團등"이라 한다)는 法人으로 하고 그 主된 事務所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. <개정 1999.2.8>

④管理公團등의 財產은 管理權者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. <개정 1999.2.8>

⑤管理權者는 管理公團등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. <개정 1999.2.8>

1.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
2. 設立目的외의 事業을 한 때
3. 設立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4. 公益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

⑥管理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企業體協議會의 設立認可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産業團地의 管理業務를 委託하거나 管理機關을 入住企業體協議會로 변경함에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. <新設 1995.12.29>

⑦入住企業體協議會의 구조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⑧管理公團등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. 이 경우 "主務官廳"은 "管理權者"로 본다. <신설 1999.2.8>